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 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건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 보조건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건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 (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 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건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 로부터 장애인 보조건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4. 보조건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건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5.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건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건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건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4. 보조건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건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5.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건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 보조건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